

대전지방법원 2021. 11. 10 선고 2021가단12138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수인

피고1. B

2. C

변론 종결2021. 10. 13.

판결 선고2021. 11. 10.

주 문

1. 피고들과 D 사이에서 별지 기재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2020. 5. 5.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금산등기소 2020. 5. 20. 접수 제8443호로 마친 각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사이에 E의 직원인 D의 회사에 대한 횡령, 배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① 보험계약자 : E

증권번호: F

피보험자 : E

피보증인 : D

보험가입금액 : 8,000만 원

보증상품 : 신용보증보험

② 보험계약자 : E 주식회사

증권번호 : G

피보험자 : E

피보증인 : D

보험가입금액 : 8,000만 원

보증상품 : 신용보증보험

나. D이 E의 영업판매 수금액을 횡령하였고, 이에 E이 위 각 보증보험계약에 기하여 원고에게 각 8,000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며, 원고는 2011. 8. 30. E에 합계 1억 6,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차전202464호로 구상금 1억 6,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1. 12. 13. "피고(D)는 원고에게 1억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31.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2. 1. 3. 확정되었다.

라. D의 아버지인 H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가 1996. 5. 21.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피고들과 D이 등이 있다.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20. 4. 7. 피고들과 D 앞으로 '1996. 5. 2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D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1/3 지분을 2020. 5. 5. 피고들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2020. 5. 20. 위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위 증여계약을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하고, 위 지분이전등기를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라 한다).

바. D은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성립된 원고의 D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1)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무상 양도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참조).

2) D이 원고에 대하여 구상금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피고들에게 증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D의 위와 같은 증여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D에게는 사해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채무자인 D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들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다.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이 위토로서 제사주재자이자 종손인 피고 B의 소유이고 다른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관한 한은 무효이므로, D이 피고들에게 지분을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1008조의3에 정한 '묘토인 농지는 그 수익으로서 분묘관리와 제사의 비용에 충당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지 그 토지상에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묘토인 농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며, 위 규정에 따라 망인 소유의 묘토인 농지를 제사주재자로서 단독으로 승계하였음을 주장하는 자는, 피승계인의 사망 이전부터 당해 토지가 농지로서 거기에서 경작한 결과 얻은 수익으로 인접한 조상의 분묘의 수호 및 관리와 제사의 비용을 충당하여 왔음을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6. 7. 4. 선고 2005다45452 판결 참조), 을 제2,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H의 사망 이전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경작하여 얻은 수익으로 인접한 조상의 분묘의 수호 및 관리와 제사의 비용을 충당하여 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묘토임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들은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을 D이 상속받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 약정을 하였으나 이는 피고들이 D에게 2011년경 이후 D에게 대여한 돈을 고려해보면 D이 상속받을 몫이 없게 됨에도 D의 체면을 세워주고자 일단 D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지분이전을 받고 다시 채권자인 피고들에게 지분이전을 마쳐준 것인바, 애초에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한 상속재산분할 약정은 비진의표시 내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고, 또 D의 채권자인 피고들이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D의 지분을 증여받는 행위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여 양도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반면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다른 채권자는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므로(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7873 판결 참조), 상속재산분할 약정 당시 D이 피고들에 대해 대여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한 채무를 고려하여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분할 약정을 하는 것 자체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D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무효라는 취지의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을 각 1/2씩 D으로부터 이전받은 것이 대물변제로 받은 것이 된다 하더라도 이 역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또한 피고들은 D과 형제지간이기는 하나 각자 사는 지역이 달라 왕래 없이 생활해온 점, 2011년경 이후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진 D에게 피고 B은 1,000만 원, 피고 C은 2,500만 원 상당을 빌려주는 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별다른 소식이 없어 D의 채무 문제가 해결되었을 것으로 생각한 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D의 법정 상속지분(1/7)보다 더 많은 지분을 상속받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D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다룬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는바(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과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D과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D에게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강길연

별지